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 (150㎡ 이상 일반음식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는 2020. 8. 19. 0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셔야 합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 조치>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p>▶ <b>출입자 명부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ul> <p>▶ <b>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li> </ul> <p>▶ <b>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b>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p>	<p>▶ <b>전자출입명부 인증</b>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p> <p>▶ <b>마스크 착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li> </ul> <p>▶ <b>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b></p>

### 150㎡ 이상 일반음식점은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적용시설임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신분증 대조 필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계도기간(8. 19. ~ 9. 9.) 이후 미설치·미사용 시설 조치**
  -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 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50 m<sup>2</sup> 이상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출입자 명부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lt;의무적용&gt;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ul> </li> <li>▶ <b>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li> </ul> </li> <li>▶ <b>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b>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b>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b>마스크 착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li> </ul> </li> <li>▶ <b>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b></li> </ul>

### 기타 방역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 검사 안내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 상시 개방
-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 영업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시
-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안내
- 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이용 안내하기
-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 음식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